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장경태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3500

발의연월일: 2024. 9. 2.

발 의 자: 장경태・박 정・이해식

강준현 · 김승원 · 부승찬

황명선 · 서영교 · 김동아

김병기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12·12 군사반란과 5.18 민주화운동 폭력 진압으로 정권을 찬탈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자들은 해당 범죄행위를 원인으로 재산을 축적했음. 과거 대법원은 이들에 대한 유죄 판결을 확정하고 추징을 선고하였으 나 해당 추징금의 일부는 환수되지 못하였음.

지난 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폭로하였음에도 몰수 · 추징을 위한 별다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, 최근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자녀 노소영이 이혼소송 과정 중 재산분할을 요구하며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의 존재를 밝힌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어떠한 조사나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음.

현행법에 따르면 범죄행위자의 사망 등의 이유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불법적으로 축적된 재산이라 하더라도 몰수나 추징을 하기 어려운 상황임.

이에 전두환, 노태우 전 대통령과 같은 헌정질서 파괴범죄자의 범죄수익 등에 대하여는 범죄자가 사망하거나 공소시효 만료로 공소제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도 몰수·추정할 수 있도록 몰수재산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.

또한 현행법 따르면 제3자에 대해서는 몰수만 가능할 뿐 추징이 불가능한바, 제3자에 대한 몰수 요건이 충족되었으나 몰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3자에 대해서도 추징이 가능하도록 하여 범죄수익의 철저한 환수를 실현하고자 함(안 제8조제1항제4호의2 및제10조제2항 신설).

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1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항 제5호 중 "제3호 또는 제4호에"를 "제3호, 제4호 또는 제4호의2에"로 한다.

4의2. 「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의 헌정질서 파괴범죄를 범한 사람이 얻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재산 및 그 범죄행위에 터잡아 획득한 직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「형법」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, 같은 법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, 같은 법 제359조 또는 제360조의 각 행위로 얻은 재산은 행위자의사망 또는 범죄의 공소시효 만료로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몰수할 수 있다.

제10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3항(종전의 제2항) 중 "제1항에도"를 "제1항 및 제2항에도"로 한다.

②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범인 외의 자로부터 추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헌정질서 파괴범죄를 범한 자에 대한 몰수·추징에 관한 적용 례) 제8조제1항제4호의2 및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발생한 범죄수익에 대하여도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8조(범죄수익등의 몰수) ① 다	제8조(범죄수익등의 몰수) ①
음 각 호의 재산은 몰수할 수	
있다.	
1. ~ 4. (생 략)	1. ~ 4. (현행과 같음)
<u> <신 설></u>	4의2. 「헌정질서 파괴범죄의
	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」
	제2조의 헌정질서 파괴범죄를
	범한 사람이 얻은 제1호부터
	제5호까지의 재산 및 그 범죄
	행위에 터잡아 획득한 직무상
	지위를 이용하여 「형법」 제
	<u>12</u> 9조부터 제133조까지, 같은
	법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,
	<u>같은 법 제359조 또는 제360</u>
	조의 각 행위로 얻은 재산은
	행위자의 사망 또는 범죄의
	공소시효 만료로 공소를 제기
	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몰수
	할 수 있다 <u>.</u>
5. <u>제3호 또는 제4호에</u> 따른 재	5. <u>제3호, 제4호 또는 제4호의2</u>
산의 과실 또는 대가로 얻은	<u>에</u>
재산 또는 이들 재산의 대가	
로 얻은 재산, 그 밖에 그 재	

산의 보유 또는 처분에 의하 여 얻은 재산

- ② · ③ (생 략) 제10조(추징) ① (생 략) <u><신 설></u>
 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8조 제1항의 재산이 범죄피해재산 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없다.

	- -					⊸ 1	2) Q	\	
	(2)	•	(3)	(연	앵.	叶	같음	.)	
제	103	조(≥	추징) (1) (현	행과	같음)	
	2	제()조	제1호	항	단/	서에	따라	범
	<u>인</u>	외	의	자로	- 부	터	추정	장하는	경
	<u>우</u>	게는	- 저]1항	-을	준	용힌	<u>다.</u>	
	<u>③</u>	제]	1항	밎	저]2ē	J:에 I	<u>-</u> 드	